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21020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redacted]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548,190,96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본세 275,178,5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54,819,09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본세 27,517,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647,599,960원, 농어촌특별세 54,819,090원의 부과처분 중 99,409,000원(취득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을 초과하는 부분[1]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redacted]시장은 2010. 5. 4. [redacted]구 B 일원의 토지 103,7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C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D는 2010. 11. 16.부터 2011. 5. 2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D는 2011. 12. 14. 원고와 사이에, 위탁자를 D, 수탁자를 원고,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E 장유지점(수익한도금액 15,6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14. 12. 2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 답'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

마. D는 2015. 2. 23.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1)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647,599,9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4,819,0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경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중 무신고 가산세를 환급함에 따라 당초 취득세 부과처분이 548,190,96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497,045,040원을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를 99,409,000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어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6. 2. 16.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 24,852,251,9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647,599,9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4,819,090원(가산세 포함) 합계 702,419,0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세목	본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액합계
취득세	497,045,030	99,409,000	51,145,930	647,599,960
농어촌특별세	49,704,500	-	5,114,590	54,819,090
합계	546,749,530	99,409,000	56,260,520	702,417,050

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8.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26.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신고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12.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중 무신고 가산세 99,409,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입주자들의 취득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활한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을 촉진하고, 조성된 산업단지의 임대 및 분양을 장려하기 위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입법취지, 산업입지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사업시행자인 D인 점, 만약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았더라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전부 면제되었을 것인데, 신탁등기의 말소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원고에게 담보신탁된 상태에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원고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형식적인 소유명의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주위적 청구).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23,327.4㎡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게, 녹지 22,961.6㎡를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 도로 및 녹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로 및 녹지를 제외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제1 예비적 청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3) 피고는 2015. 2. 23. D로부터 취득세 감면신고를 받은 후 적시에 원고 또는 D에 고지를 하거나 D의 신청을 반려하였다면 원고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여 D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결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제2 예비적 청구).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토지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등 참조).

(3)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인 D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이자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위탁자인 D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과 같은 조 내에 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3항은 모두 특정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사업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법상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방세 경감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현행법은 위 제4항이 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2]), 이 사건 감면조항은 그 문언대로 산업입지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세를 감경하여 준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사업시행자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과거형 표현 대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2)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면 이후 그 소유명의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의 취득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고, 위탁자인 D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아닌 D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D의 위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도록 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로써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 가액증가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⑤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기 위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는 데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부동산 취득의 주체인 '사업시행자'에 '사업시행자가 아닌 부동산의 소유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불분명하게 되어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질 우려도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⑥ D는 금융기관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담보신탁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신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 이전에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말소되지 못한 것 역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D의 사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담보신탁에 따른 위험이 결과적으로 D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며(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나)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14. 12. 2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는데, 그 공공시설 및 토지의 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23,327.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에, 녹지 22,961.6㎡(이하 '이 사건 녹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장에게 기부채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인 이 사건 도로 및 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및 녹지를 제외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가액 24,852,251,993원에서 이 사건 도로 및 녹지의 면적에 안분한 취득가액 11,093,325,560원[3]을 제외한 나머지 13,758,926,4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세목	본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액합계
취득세	275,178,520	28,315,860	303,494,380
농어촌특별세	27,517,850	2,831,580	30,349,430
합계	302,696,370	31,147,440	333,843,810

라)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 및 녹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취득세 303,494,380원(본세 275,178,5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315,860원), 농어촌특별세 30,349,432원(본세 27,517,85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831,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3) (이 사건 도로의 면적 23,327.3㎡ + 이 사건 녹지의 면적 22,961.6㎡) ÷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03,700.5㎡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852,251,993원, 10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다가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에 있어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의 납세의무자는 각 세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기초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있는데, 신탁관계에 있어서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이 선고되기 전까지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4561 판결 등).

② 이에 위탁자인 D는 2015.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위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99,409,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과세관청인 피고 역시 이를 수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③ 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④ 구 지방세기본법(2015. 12. 29. 법률 제13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유형의 가산세 면제요건을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하나의 조문에서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조세를 납부한 성실한 의무이행자와 사이에서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무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고 가산세 등의 면제요건과 달리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앞서 본 이 사건 도로 및 녹지에 대한 부분 포함)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도로 및 녹지에 대한 부분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중 취득세 본세 275,178,520원, 농어촌특별세 본세 27,517,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판사 정진화

판사 박근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4

■ 구 지방세기본법 (2015. 12. 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끝.